

## 국내 위성사업 정책방향

徐 輔 賢

通信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I. 序 說

인공위성을 통한 위성사업, 특히 위성통신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특징 및 장점으로서는 同報性, 廣域性, 回線設定迅速性을 들 수 있다.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선진각국과 Intelsat, Inmarsat과 같은 국제위성통신기구(특히 政府間衛星機構)는 이러한 위성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로와 방송망 등에 다양한 신규위성서비스를 창출해 왔다. 또한 이러한 Intelsat, Inmarsat등 국제위성기구는 대다수 회원국간에 체결된 운영협정 등을 통하여 다른 일반위성사업자에 비하여 우선적 지위를 누리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2년 여름부터 과학위성인 우리별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INTELSAT의 賃借衛星을 이용한 위성통신서비스도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중반에는 通信, 放送 복합위성인 無窮花號(Koreasat)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바 육상기간통신망의 확충과 더불어 고도 통신, 방송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위성망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아가는 衛星時代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성사업 추진내용과 위성사업의 국제환경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국내 위성사업을 전개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몇가지 정책적인 문제 및 제도정비사항에 초점을 두어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항목의 범주에는 위성사업 기본정책방향, 국내제도정비, 해외위성대응문제, 방송관련문제, 위성시스템이용활성화 및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다 하겠다.

### II. 國內衛星事業의展開

최근 국내위성사업의 전개내용은 [표1]과 같다. 여러 가지 국내위성서비스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성사업은 無窮花號위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사업은 통신, 방송 복합위성 2개를 95년 4월(주위성) 및 10월(예비위성)에 발사하여 무궁화위성에 의한 본격적인 국내 위성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지위향상과 21세기 통신 선진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TV 난시청지역 해소 및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직접위성방송서비스(DBS)를 비롯한 화상회의, 고속 데이터통신 등, 정보사회의 첨단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으로서 95년 위성 확보시까지 위성체, 발사체관제시설 도입과 병행한 첨단기술의 전수, 국산화가 가능한 지상장비의 국내개발 등을 통한 산업육성과 기술력 향상등을 이룩하여 제2세대 무궁화 위성사업을 위한 기반기술의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1. 1990年代 國內衛星事業의 展開

사 업	사 업 내 역
데이콤 임차위성서비스 ISB	시기: 1990. 4 용량: 1,544Mbps급 TI 3개 · 512Kbps TI 1개의 고속회선 100회선 제공서비스: 정보망과인말설비에따라서 64Kbps-1,544Mbps 전송 이용사: KIL, 태원회사, 외국회사 등 해외통신 많은 기업
우리별 1호	시기: 1992. 8 내역: LEO-1300Km, 1일13회전, 한반도7회봉과, 1회15분 통신가능 목적: 과학실험 및 아이슈어업무
한국통신 임차위성서비스	시기: 1992. 9 (Intelsat) 목적: 위성서비스수요 조기충족 및 운영능력확대 위성사업통신망서비스(VSAT서비스): 연암통신, STM 세우데이티콤통신서비스 위성디지털통신서비스: 공공기관, 금융기관 고속데이티콤통신서비스 위성비디오통신서비스: CATV, TVRO, SNG, SBC사내방송, 학원, 종교단체

무궁화호 위성서비스 및 증계기 내역과 무궁화 위성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표2], [표3]과 같다.

표 2. 무궁화호 위성서비스 및 증계기

구분	목적	서비스내역	증계기수
통신용	직접회선방송	[· 광명방송, 교육방송 등] 미정	3
	비디오중계	TV/CATV중계, 영상회의등	3
	국간중계	주요도시간 전화, 고속데이터 회선	1
	도시배치	도시, 산간지역 음성, 데이터회선	2
	영동통신	비상, 화재복구용 회선 및 임시전화	2
교육통신용	국가, 공공기관, 금융, 언론, 기업체 등	2	
지속전용통신 (VAST)	국가, 공공기관, 금융, 언론, 기업체 등	4	

표 3. 무궁화 위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단계	주요추진계획
1단계(1992년~1995년) 위성통신 시범사업	Intelsat 위성증계기 임차를 통한 시범적 사업 추진 · 제1차 위성 통신망(VAST) · 위성기동통신망(VAST) · 위성디지탈 회선
2단계(1995년~2005년) 제1차 무궁화 위성 사업	무궁화위성을 통한 본격적 사업 추진 · 제1차 위성 방송 · 국가간, 프로그림 중계 · 교육 및 서비스데이터 전송 · 도시배치, 비상, 화재통신 등
3단계(2006년~ ) 제2차 무궁화 위성 사업	국내 독자기술을 활용한 위성사업 추진 · 위성 서비스 · PCN 용역방송 등 첨단서비스 추가 제공

III. 衛星事業의 國際環境

1. 국제규제체제와 대응

정부간위성기구들이 행하고 있는 위성사업과 달리 무궁화호위성과 같이 위성을 이용하여 전개되는 目的事業의 適用範圍가 국내지역에 국한되는 國內衛星事業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위성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하게 이용되는 周波數/軌道資源의 성격상 國際規制體制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몇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國際聯合의 宇宙平和利用委員會(UN COPUOS)에서 주로 성안되는 宇宙資源利用에 관한 基本的 規制體制를 들 수 있다. 이에는 1967년 「宇宙原則條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의 基本原則인 宇宙探査 및 利用自由의 原則, 共同利益의 原則, 非專有의 原則등이 해당된다. 국제규제체제의 입안과정의 참여 뿐만 아니라 국내위성사업의 전개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제체제의 상호연계내용과 해석적용에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원칙을 기초로 하여 실제 우주물체를 발사, 운용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제관리를 위하여 체결된 「登錄協約」(Registration Convention)과 「責任協約」(Liability Convention)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선진외국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위성사업

을 주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성사업의 성격상 국가의 엄격한 감독관리가 국제의무로서 요구되는 國家責任의 法理를 적용받게 된다. 둘째, 國際電氣通信聯合, 특히 世界電波通信會議(World Radiocommunications Conference : WRC)와 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s Assembly : RA)에서 성안되는 無線通信 또는 電波利用部門에 관한 國際規制體制의 내용, 즉 국제조약으로서 강제적용되는 국제전파규칙과 관련권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規制體制는 방대한 國際電波規則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전파통신기술이 실용화됨에 따라 새로운 利用體制가 정립되게 된다. 셋째, 衛星通信/放送을 통한 國際衛星事業에 관한 國際規制體制가 Intelsat協定이나 Inmarsat協約 등에 의하여 會員國에 적용된다. 이러한 事業추진의 規制體制에서는 國內衛星事業이라 하더라도 해당 國際機構의 운용 위성시스템에 대한 技術的 損傷與否問題를 다루게 되며, 지역위성시스템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經濟的 損傷與否問題까지도 조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적법한 사업운용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성사업의 내용과 관련되는 수많은 多者條約이 회원국사이에 체결된 保護法益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적용되는데 국내위성사업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多者間 協定內容의 의무사항을 기본적으로 적용받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파분야와 위성분야는 기술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일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국제규제체제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적용받게 되는 國際電氣通信聯合의 전파부문의 구조변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를 특히 유념해야 하며, 기존의 적용범위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新規衛星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규제체제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이의 연장선에 가깝게는 SNG, 멀게는 저궤도위성시스템, PCN등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수년내에 적용받게 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자발적전문가그룹의 국제전파규칙 개정동향에 대해서도 주의깊은 분석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성사업 국제동향과 전망

宇宙事業을 주도하고 있는 美國, 日本, 유럽의 최근동향을 분석해보면 모두 기존의 政府間 國際衛星通信機構(Intelsat, Inmarsat, Eutelsat)가 주도하는

獨占的 事業體制에서 벗어나 최소범위의 基本通信領域을 제외한 부문은 國際事業分野까지도 自由化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다만 그 속도와 양을 조정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國內衛星事業分野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인 日本의 경우에도 이미 第1種 通信事業者뿐만 아니라 第2種 通信事業者도 다수 출현하고 있는 현실이다.<sup>1)</sup> 일본의 경우를 좀더 살펴보면 1995년에는 200여개의 중계기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일본의 위성서비스사업은 위성중계기가 1994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사업계획화에 추진되고 있으며, 중계기 시장을 둘러싼 일본위성사업자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과잉은 방송부문과 같은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국제개방과 관련하여 주변국가에게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는 위성회선의 제공형태와 같은 사업의 공세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내위성사업과 간접적인 경쟁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지해야 할 사항은 각국의 국내위성사업보다 통상적으로 우선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위성사업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국내통신망(유선계이든 무선계이든)과 연결될 수 있는 위협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변화의 추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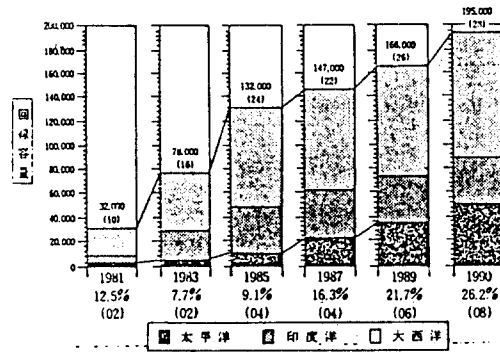
- 정지위성체도를 이용하는 사실위성시스템의 확산
- 저궤도사설위성시스템의 등장
- 지역위성시스템의 급팽창
- HDTV와 FPLMTS를 위한 국제논의의 진행
- 위성통신사업과 위성방송사업 개방의 가속화

참고로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Intelsat위성의 회선용량을 살펴보면 1981년의 약 3만회선에서 1990년에는 약20만회선으로 6배이상 증가되었다. 특히 대서양지역의 회선수증가가 현저하여 이만회선에서 십만회선으로 약5.8배나 증가하여 1990년기준으로 전체의 약 53.8%를 점유하고 있다. 태평양지역에서의 증가율은 전체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1990년 기준으로 26.2%를 점유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동통신용의 위성시스템인 Inmarsat의 경우 1983년의 8천

1)일본의 제1종 통신사업자는 우리나라의 전기통신법 제상 기간통신사업자에 상당하며, 제2종 통신사업자는 우리나라의 부가통신사업자에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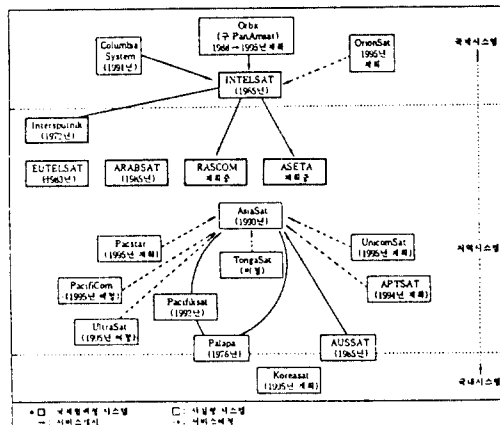
회선정도에서 1991년에는 4만회선을 넘어서 8년사이에 5배의 증가를 보였으나, 태평양지역의 용량은 1991년기준으로 전체의 13%정도에 불과하다.

표 4. INTELSAT계 위성용량의 추이



이상과 같은 위성사업분야의 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그동안 국제회선제공사업부문에 있어서 독점적지위를 유지해오던 Intelsat, Inmarsat에 대항하여 경쟁하는 대규모 위성사업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급격한 전파통신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통상협상의 진전과 함께 지구촌 전체를 통신시장화 하고자 하는 대규모의 저궤도 위성시스템 계획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토로라사의 이리디움계획 및 이와 경쟁관계인 Global Star, Project-21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5. 위성시스템의 경쟁관계



私見으로서, 위성사업의 국제동향을 요약평가하면 80년대까지 각국의 주관청 또는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누려온 Intelsat 또는 Inmarsat 주도의 국제위성사업체에서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사설 위성시스템의 등장이 대륙간서비스 지역서비스를 위하여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의 긍정적인 면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련사업자들이 위성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역으로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방송사업의 개방화와 더불어 데이터 및 영상전송사업도 포괄하는 각종 기간서비스망이 국내에도 진입할 수 있는 망시스템의 확충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방송사업의 측면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예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있는 홍콩의 STAR-TV이다. 이 후자의 예에서 그 이용하는 설비가 위성방송용 중계기가 아니고 위성통신용 중계기라고 하는 점은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

#### Ⅳ. 위성사업 정책방향과 제도정비

주요 선진각국의 위성정책 및 사업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 위성통신사업은 단지 통신부문으로 국한하여 처리하기보다는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주요부문으로서 인식되어,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범국가적 추진체제):

○ 위성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기통신자유화 경향은 위성부문에도 무관하지 않아, 각 국에서 경쟁의 원리와 규제완화가 진행:

○ 초기투자와 위험성을 내포하는 경제적 요인과 아울러, 기술발달에 따른 위성용량의 대 형화, 기능고도화, 사용수명의 연장이라는 기술적 요인과 우주부문접속의 자유화로 용량의 초과과다공급의 초기현상.

우리나라의 위성사업을 추진해 나아감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진각국의 사례와 급변하는 국제위성통신환경에 대한 정책대응과 제도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첫째, 위성정책의 기본방향정립이 범부처차원에서 절실하다고 하겠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성통신사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하는 부분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제2세대 위성사업 추진에서의 독자위성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성관련기술의 도입 및 확보가 주요 안전이라 할 수 있으며 위성기술의 연구개발도입·시험·상용단계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우주개발이라고 하는 지극히 광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는 상호조정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성사업의 통신분야를 제외한 다른 발사체관련분야에서의 동일한 수준의 노력이 병행될 때 전체적인 우주개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후자의 분야는 주로 항공분야와 국방분야와 필연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이 분야에서의 공동노력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전체적인 우주개발 거대프로젝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고자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위성시스템의 신규도입에 대비하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관련제도의 개정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각각의 목적업무별로 개별적인 법의 제정을 통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흠결이 생길수 있고, 또한 공유관계, 공용관계, 임차관계등에서 각부처마다 정책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하여 지원체제, 개발체제, 이용체제 등에서 형평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이용관계는 하나의 중추적인 법제를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위성 및 지구국설비의 설치요건 및 등록절차
- 국외위성의 구입 및 임차의 요건
- 전파법상 일반 무선국에 관한 규정이 불합리한 경우 신규적용내용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명령권
- 위성통신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통신, 방송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위성에 대한 규제적용범위

또한, 위성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전파통신의 관리를 중심으로 해온 현행 전파 관리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무선국허가제도의 위성시스템 적용상의 문제로는 [표-6]의 사항을 들 수 있다.<sup>2)</sup>

2) 상세한 제도정비 내용검토에 대해서는 서보현, 「우주부문 무선국 허가제도」, (통신개발 연구원, 1993) 참조

표 6. 위성시스템의 도입과 전파관리제도의 정비

구분	내용
우주국 부분	국공분류 허가신청의 단위 이차주어 종사업부 (우주국 개설 허용) 시험면허발사 허가 면허설비 할거 우주국 허가기간 무선종사자의 지정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 제도의 변경과 면허발사 장치기능 보유 우주국에 대한 설비규칙 제정
지구국 부분	수신전용 지구국 우주국 및 지구국에 대한 설비규칙 제정

기타 제도정비의 사례로서는 일본의 예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은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통신, 방송사업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국내위성통신사업이 아직도 초기단계임을 감안, 財政投融资, 無利子融資, 産業投資 特別會計에서 출자하는 財政措置 및 稅制措置를 강구하고 있다. 세제면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대하여 固定資産稅의 특례와 事業所稅 非課稅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해서는 사업용에 사용되는 시설중 신규증설분에 관한 事業所稅도 非課稅되고 있다.

셋째, 무궁화호의 목적서비스 방송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방송과 관련되는 정책방향정립과 제도정비도 불가결하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정책결정사항중의 하나는 위성방송전송방식의 결정이라 하겠다. 현재 선진국가들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정책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성방송과 HDTV 개발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지상방송이든 위성방송이든 궁극적으로는 영상, 음성, 데이터를 유연하게 종합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복합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위성방송을 디지털방식으로 채택하는 경우 고선명TV와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부품기술개발이 상호연계성이 높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하겠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각국의 동향을 고려하여 위성방송기술개발과 고선명TV기술개발을 디지털방식을 통하여 연계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리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내 종합유선방송망에 '96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되는 광케이블TV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망간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송의 매개체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송의 내용이 방송이든 통신이든 종합적인

고려는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방송과 관련되는 제도정비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위성을 통한 TV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방송계에서 요구하는 지구국분야가 바로 SNG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대외적인 대항논리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는 바로 전파관리제도상의 상호주의라 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방송사에는 국영방송사가 없는데, 외국관할구역에서 SNG지구국을 운영하려고 할 때, 미국내에서 외국정부의 국영방송사업자는 무선구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채택하더라도 미국만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실질적 상호호혜적인) 상호주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위성사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위성의 한시적 수명을 감안할 때 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조기확산이 필요한바 위성사업개시이전부터 적극적인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신규서비스의 도입은, 비용상의 문제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 장애가 될 수 있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인식상의 부족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VSAT의 발달이 훨씬 저조한 것이 국가규제상의 문제도 있지만, 최근의 기업인지도 조사에서 보면 가입자들의 인지도가 역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수요조사에 의하면, 상위 300대 기관들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통신담당자들까지도 각 위성서비스에 대한 기능이나 장단점에 관한 인지도가 50% 미만이며 특히 VSAT서비스의 경우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성통신, 방송서비스에 대한 장단점과 그 효율성, 비용절감의 효과, 서비스 유형별로 기업에서의 성공적인 응용사례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장차 무궁화 위성시기의 수요확보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위성통신,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제로 위성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성서비스 도입기업에 대한 위성망 구성에 대한 컨설팅, 운영 및 유지보수요원의 위탁교육실시, 그리고 장비설치시의 편의제공, 운영장비에 대한 렌탈 및 리스등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해외위성사업에 대한 대응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그 일례로서, 앞으로 구축된 Iridium, Project-21과 같은 저궤도위성사업에 대한 참여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정부간기구의 LEO시스템과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전개되는 LEO시스템의 참여에 있어서의 정부의 직접관여범위는 차이가 있다. 외국의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전개하는 LEO에 대한 투자참여 등은 국내 참가 희망기업이 사업적인 성공측면, 기술적인 측면,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해외투자승인을 요청해 올 때 그 사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진체, 국내 통신사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참여의 허용여부를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사업투자의 참여가 국내 통신사업, 방송사업자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지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용인하는 것은 또다른 불공정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분리해서 고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위성회선의 공급우선순위의 정립이 범부처차원에서 요구된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위성선진국에서는 경쟁자유화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위성서비스의 향상 및 VSAT서비스의 확산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중계기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점, 채산성 저하에 따른 M&A 현상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위성사업의 초기에 있으며 통신사업은 중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과 같이 우주자원에 대한 추가확보를 정책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위성중계기 공급과잉으로 인한 채산성악화의 문제

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전용회선의 품질과 가격이 광통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공급정책에 있어서 사전검토조정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위성회선의 성격상 회선공급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공급량의 조절은 오히려 광통신과 같은 유선계의 수급조절을 통해서 조율되어야 국가 기간회선망(경우에 따라서는 전용회선으로 이용가능한 자가통신망도 포함하여) 전체공급정책이 비용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성사업, 위성통신사업의 성공여부는 위성시스템의 독자적인 시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분야 망전송회선의 총공급규모의 단계적이행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에 있어서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책무범위로도 연결되어야 하고, 별다른 규제없이 마구 확충할 수 있는 현행 자가통신설비의 시설자와도 관계를 갖지 아니할 수 없다. 위성통신사업의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위성통신사업의 성공여부는 통신분야 전체회선공급규모의 조절에 있어서 위성회선의 우선적사용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아가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며 바로 이러한 점은 위성통신 중장기 정책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기본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라고 하는 점이다. 다시 거듭 강조하건대, 위성회선의 설치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많은 제약조건과 한시적인 수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지상의 여건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筆者紹介



徐 輔 賢

1981年 2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990年 2月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1985年 4月 ~ 1994年 5月 통신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실(현: 연구위원)

1988年 ~ 1989年 McGill 대 법과대학원/항공우주법 연구소 객원 연구원

1990年 ~ 1994年 ITU, 이사회, WARC, VGE등 정부대표단 다수참석

주관심 분야 : 통신정책 및 법제, 위성제도, 전화통신제도